

[변경대비표]

- 펀드명 : 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- 작성기준일 : 2023.02.24
- 정정사유 :
 - 집합투자기구 유형변경(주식파생형 -> 주식형)
 - 집합투자기구 유형변경에 따른 파생상품위험평가액 한도 축소(20%->10%)
- 효력발생일 : 2023.03.30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펀드명 변경	유형변경	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제1조(신탁계약의 목적)	유형변경으로 인한 정정	③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. <이하 생략>	③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이내를 한도로 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. <이하동일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유형변경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 10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”으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타임폴리오 TIMEFOLIO 미국나스닥 10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”으로 한다.
		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투자신탁 2. 증권(주식파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	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투자신탁 2. 증권(주식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
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유형변경으로 인한 정정	3.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	3.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
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유형변경으로 인한 삭제	⑩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계약금액 및 법시행령 제 96 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	<삭제>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-----	------	-------	-------

공통	유형변경	주식-파생형	주식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	⑥ 장내 파생상품	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20% 이하	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10% 이하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수익률 나. 연도별수익률	업데이트	- 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4) 파생상품 관련 공시	유형변경으로 인한 문 구 삭제	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 투자자산을 파생상품에 운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계약금액 ②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 기시점의 손익구조 ③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 에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 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 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(1)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 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 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	<삭제>

		<p>상품</p> <p>(2) (1)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</p> <p>④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</p>	
--	--	--	--